

**주간농업·농촌동향 2009년 농림어업 생산액 산출 결과**

**2010.08.09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2009년 농림어업 생산액 산출 결과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**□ 산출 개요**

○ 기준연도 및 가중치

- 기준연도 : '04~'06의 3개년 평균치 적용

- 품목별 가중치 =  $\frac{\text{기준연도 품목별 생산액}}{\text{기준연도 총생산액}}$

○ 품목별 산출방식

- 생산액 : 품목별 연간생산량 × 연평균 농가판매가격

- 개별품목 생산지수:  $\frac{\text{해당연도 생산량} \times \text{기준연도 농가판매가격}}{\text{기준연도 생산량} \times \text{기준연도 농가판매가격}} \times 100$

○ 대상품목

- 기준연도 농림업 총생산액의 1/10,000이상을 점하고 있는 145개 품목

· 농업 : 112품목

※ 경종 : 96품목(식량작물 12, 채소 41, 과실 11, 기타 32)

※ 축산 : 16품목(가축 10, 축산물 6)

· 임업 : 33품목

※ 용·죽재 2, 연료 3, 농용자재 3, 수실 11, 기타 14

**□ 농림업 생산액 산출 결과**

○ 농림업 생산액은 42조 9,951억 원으로 전년대비 8.4% 증가

- 생산지수와 판매가격지수가 모두 증가

- 농림업 생산지수('05=100) : ('07) 100.6 → ('08) 105.3 → ('09) 108.0
- 농가판매가격지수(전체, '05=100) : ('07) 101.4 → ('08) 99.4 → ('09) 101.0

○ 농업 생산액은 41조 3,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7.5% 증가

- 농작물 생산액은 24조 8,802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.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.9%로 2008년보다 4.8%P 감소

- 식량작물 생산액은 9조 8,635억 원으로 전년대비 7.0% 감소한 반면, 채소 생산액은 7조 5,541억 원, 과실 생산액은 3조 5,106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.7%, 17.1% 증가

※ 농림업 생산액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량작물 22.9%, 채소 17.6%, 과실 8.2%임.

<농작물 생산액 추이>

구분	2007		2008		2009		전년대비	
	생산액(비중)		생산액(비중)		생산액(비중)		증감	증감률
- 식량작물	89,095	(24.9)	106,067	(26.7)	98,635	(22.9)	△7,432	△7.0
· 미 곡	78,575	(21.9)	93,796	(23.7)	<b>86,800</b>	<b>(20.2)</b>	△6,996	<b>△7.5</b>
- 채 소	74,839	(20.9)	72,135	(18.2)	75,541	(17.6)	3,406	4.7
· 마 늘	3,999	(1.1)	3,439	(0.9)	4,467	(1.0)	1,028	29.9
· 양 과	1,659	(0.5)	2,804	(0.7)	4,029	(0.9)	1,225	43.7
- 과 실	28,223	(7.9)	29,984	(7.6)	35,106	(8.2)	5,122	17.1
· 사 과	5,143	(1.4)	6,977	(1.8)	8,130	(1.9)	1,153	16.5
· 감 귤	4,526	(1.3)	6,395	(1.6)	9,065	(2.1)	2,670	41.8

단위 : 억 원, %

- 축산업 생산액은 16조 4,8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.3% 증가. 전체 농림업 생산액 대비 비중은 38.3%로 2008년(34.3%)보다 4.0%P 증가

- 축산업 생산지수('05=100) : ('07) 107.0 → ('08) 116.0 → ('09) 120.1
- 농가판매가격지수(축산물, '05=100) : ('07) 93.3 → ('08) 93.0 → ('09) 103.3
- 한육우 생산액은 4조 9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.4% 증가하였고, 돼지는

5조 4,734억 원, 닭·계란은 3조 3,819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4.0%, 30.7% 증가

※ 농림업 생산액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우 9.5%, 돼지 12.7%, 닭·계란 7.9%임.

<축산업 생산액 추이>

단위 : 억원, %

구분	2007		2008		2009		(전년대비)	
	생산액(비중)	(비중)	생산액(비중)	(비중)	생산액(비중)	(비중)	증감	증감률
- 축산업	112,773	(31.5)	135,929	(34.3)	164,840	(38.3)	28,911	21.3
· 한우	34,478	(5.3)	35,476	(8.9)	40,948	(9.5)	5,472	15.4
· 돼지	33,197	(10.8)	40,853	(10.3)	54,734	(12.7)	13,881	34.0
· 닭·계란	18,812	(5.2)	25,880	(6.5)	33,819	(7.9)	7,939	30.7

○ **임업 생산액**은 1조 6,309억 원으로 전년대비 36.7% 증가하였고, 생산액 비중은 3.8%로 2008년보다 0.8%p 증가

- 임업 생산지수 ('05=100) : ('07) 100.6 → ('08) 98.4 → ('09) 132.0

○ 한편, 농림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은 ① 미곡(20.2%), ② 돼지(12.7%), ③ 한우(9.5%), ④ 닭, ⑤ 우유이며, 이들 5개 품목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50.5% 차지

- 계란, 오리, 건고추, 인삼, 감귤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63.1%로 나타남.

□ **농림업 생산액의 전년대비 증감 요인**

○ **식량작물** 생산액은 쌀 생산량 증가(1.5%) 및 소비감소 등에 따른 가격 하락(전년대비 △8.8%)과 보리·잡곡·서류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7.0% 감소

- **채소류**는 생산량은 소폭 감소(△0.5%)하였으나, **가격상승**(고추 14.5%, 마늘 36.5%, 양파 8.4%)으로 생산액은 전년대비 4.7% 증가

- **과실류** 생산액은 **생산량 증가**(사과 5.0%, 감귤 18.2% 등)와 **가격상승**(사과 11.0%, 감귤 19.9% 등)으로 전년대비 17.1% 증가

○ **축산 부문**은 **생산량 증가**(전년대비 한우 3.2%, 돼지 8.5%, 닭14.6%)와 **가격 상승**(한우 12.4%, 돼지 23.5%, 닭 23.5%)으로 생산액이 21.3% 증가

○ **임업 생산액**은 용재(목재), 수실(밤, 호도 잣 등), 약용(약초, 산수유, 오갈피 등) 등 **임산물 생산량이 증가**함에 따라 생산액도 36.7% 증가

□ **생산액 변화가 큰 품목**

○ **쌀** :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, 소비량 감소 등으로 **가격 하락**

- 생산량 : ('08) 4,843천 톤 → ('09) 4,916 (증1.5%)

- 1인당 연간 소비량 : ('08) 75.8kg → ('09) 74.0 (△1.0%)

○ **한우** : **수입량 감소 및 소비 증가**로 **국내산 가격 상승**

- 수입량 : ('08) 224천 톤 → ('09) 198 (△11.6%)

- 1인당 연간 소비량 : ('08) 7.5kg → ('09) 8.1 (증8.0%)

○ **돼지** : **수입량 감소, 국내생산량 증가 및 국내산 선호**에 따른 **가격 상승**

- 수입량 : ('08) 214천 톤 → ('09) 210 (△1.9%)

- 1인당 연간 소비량 : ('08) 19.1 → ('09) 19.1

○ **감귤, 사과** : **오렌지 수입 감소, 국내 과일 소비 증가**로 **국내산 가격 상승**

- 오렌지 수입량 : ('08) 135천 톤 → ('09) 95 (△29.3%)

- 사과 1인당 소비량 : ('08) 9.6kg → ('09) 9.9 (증3.1%)

- 감귤 1인당 소비량 : ('08) 13.0kg → ('09) 15.4 (증18.5%)

○ **양파, 마늘** : **수입 감소**로 인해 **국내산 가격 상승**

- 양파 수입량 : ('08) 39천톤 → ('09) 26 (△32.9%)

- 마늘 수입량 : ('08) 53천톤 → ('09) 32 (△39.1%)

- 양파 1인당 연간 소비량 : ('08) 17.0kg → ('09) 20.1 (증18.2%)

※ 상위 30개 품목의 생산액 및 생산액 비중은 부록 참고.

부록 1.

<상위 30개 품목 생산액>

단위 : 억 원, %

순위	'06		'07		'08		'09		
	품목	생산액	품목	생산액	품목	생산액	품목	생산액	증감률
전체		363,893		358,372		396,626		429,951	8.4
1	미 곡	84,057	미 곡	78,575	미 곡	93,796	미 곡	86,800	-7.5
2	돼 지	36,093	돼 지	33,197	돼 지	40,853	돼 지	54,734	34.0
3	한 우	28,356	한 우	31,156	한 우	32,819	한 우	38,054	16.0
4	우 유	15,213	우 유	15,512	우 유	16,041	우 유	20,229	41.5
5	닭	13,300	닭	10,275	닭	14,294	우 유	17,384	8.4
누계		177,020		168,715		197,803		217,202	
6	계 란	8,674	건고추	9,990	계 란	11,586	계 란	13,590	17.3
7	수 박	8,294	계 란	8,537	오 리	11,544	오 리	12,323	6.8
8	건고추	8,157	수 박	8,009	수 박	9,393	건고추	9,913	8.7
9	딸 기	7,596	딸 기	7,997	건고추	9,117	인 삼	9,412	7.6
10	인 삼	7,069	인 삼	7,990	인 삼	8,749	감 껍	9,065	41.7
누계		216,809		211,238		248,192		271,505	
11	벗 짚	6,804	배 추	7,195	딸 기	7,746	딸 기	8,575	10.7
12	오 리	6,480	벗 짚	7,111	수 박	7,000	수 박	8,261	-12.1
13	배 추	6,346	토마토	6,642	사 과	6,977	사 과	8,130	16.5
14	토마토	6,242	감	6,568	감	6,481	감	6,719	3.7
15	감 껍	6,209	오 리	5,824	감 껍	6,395	벗 짚	6,234	-10.9
누계		248,889		244,578		282,791		309,424	
16	감	6,170	포 도	5,254	배 추	6,287	토마토	6,028	4.3
17	포 도	5,364	사 과	5,143	토마토	5,778	배 추	5,806	-7.7
18	사 과	5,272	감 껍	4,526	참 외	4,570	포 도	5,046	16.1
19	오 이	4,634	오 이	4,059	포 도	4,345	오 이	4,647	9.5
20	육 우	4,379	참 외	4,040	콩	4,265	참 외	4,645	1.6
누계		274,709		267,600		308,036		335,597	
21	참 외	4,163	마 늘	3,999	오 이	4,242	마 늘	4,467	29.9
22	풋고추	3,975	산 약	3,754	마 늘	3,439	콩	4,358	2.2
23	마 늘	3,903	무	3,552	무	3,386	양 파	4,029	43.7
24	무	3,484	풋고추	3,457	풋고추	3,035	고구마	3,189	15.5
25	콩	3,255	육 우	3,322	양 파	2,804	무	3,066	-9.5
누계		293,489		285,684		324,942		354,706	
26	배	2,829	배	3,245	고구마	2,760	산나물	3,024	41.0
27	호 박	2,637	고구마	3,008	육 우	2,657	육 우	2,894	8.9
28	고구마	2,404	콩	2,709	배	2,413	호 박	2,673	14.5
29	양채류	2,253	양채류	2,517	호 박	2,334	배	2,499	3.6
30	복숭아	2,096	호 박	2,341	표 고	2,290	양채류	2,382	10.1
누계		305,707		299,504		337,436		368,179	

부록 2.

<상위 30개 품목의 생산액 비중>

단위 : %, %P

순위	'06		'07		'08		'09	
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
전체		100.0		100.0		100.0		100.0
1	미 곡	23.1	미 곡	21.9	미 곡	23.7	미 곡	20.2
2	돼 지	9.9	돼 지	9.3	돼 지	10.3	돼 지	12.7
3	한 우	7.8	한 우	8.7	한 우	8.3	한 우	8.9
4	우 유	4.2	우 유	4.3	우 유	4.0	닭	4.7
5	닭	3.7	닭	2.9	닭	3.6	우 유	4.0
누계		48.6		47.1		49.9		50.5
6	계 란	2.4	건고추	2.8	계 란	2.9	계 란	3.2
7	수 박	2.3	계 란	2.4	오 리	2.9	오 리	2.9
8	건고추	2.2	수 박	2.2	수 박	2.4	건고추	2.3
9	딸 기	2.1	딸 기	2.2	건고추	2.3	인 삼	2.2
10	인 삼	1.9	인 삼	2.2	인 삼	2.2	감 껍	2.1
누계		59.6		58.9		62.6		63.1
11	벗 짚	1.9	배 추	2.0	딸 기	1.9	딸 기	2.0
12	오 리	1.8	벗 짚	2.0	벗 짚	1.8	수 박	1.9
13	배 추	1.7	토마토	1.9	사 과	1.8	사 과	1.9
14	토마토	1.7	감	1.8	감	1.6	감	1.6
15	감 껍	1.7	오 리	1.6	감 껍	1.6	벗 짚	1.4
누계		68.4		68.2		71.3		72.0
16	감	1.7	포 도	1.5	배 추	1.6	토마토	1.4
17	포 도	1.5	사 과	1.4	토마토	1.4	배 추	1.4
18	사 과	1.4	감 껍	1.3	참 외	1.2	포 도	1.2
19	오 이	1.3	오 이	1.1	포 도	1.1	오 이	1.1
20	육 우	1.2	참 외	1.1	콩	1.1	참 외	1.1
누계		75.5		74.7		77.7		78.1
21	참 외	1.1	마 늘	1.1	오 이	1.1	마 늘	1.0
22	풋고추	1.1	산 약	1.0	마 늘	0.9	콩	1.0
23	마 늘	1.1	무	1.0	무	0.9	양 파	0.9
24	무	1.0	풋고추	1.0	풋고추	0.8	고구마	0.7
25	콩	0.9	육 우	0.9	양 파	0.7	무	0.7
누계		80.7		79.7		82.1		82.5
26	배	0.8	배	0.9	고구마	0.7	산나물	0.7
27	호 박	0.7	고구마	0.8	육 우	0.6	육 우	0.7
28	고구마	0.7	콩	0.8	배	0.6	호 박	0.6
29	양채류	0.6	양채류	0.7	호 박	0.6	배	0.6
30	복숭아	0.6	호 박	0.7	표 고	0.6	양채류	0.6
누계		84.0		83.6		85.1		85.6

**주간농업·농촌동향 원산지표시 65만개 전체 음식점 확대 시행**

※ 본 자료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**□ 제도 추진경과**

-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('94)
  - 품목확대 : ('94)220품목 → ('99)439 → ('02)442 → ('09)531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('08. 7)
  - 대상 : 5개 품목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쌀, 배추김치)
- 『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』 제정('10. 2. 4)
  - 하위법령 제정 추진 : 차관회의(7.29), 국무회의(8. 3)

**□ 개요**

구 분	현 행	개선내용
음식점 표시 대상 품목	○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100㎡이상의 쌀·배추김치	○추가 : 오리고기, 배달용 닭고기 ○확대 : 100㎡미만의 쌀·배추김치
가공품 표시대상	○50%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, 50%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 표시	○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만 표시 - 다만, 98% 이상의 원료가 있는 경우 1가지
신고 포상금	○농산물 : 200만 원 범위내 ○수산물 : 100만 원 범위내	○농수산물 : 200만 원 범위내
과태료 부과기준	<신 설>	○영수증 비치·보관의무 위반자 : 20만 원
통신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	○농산물 및 그 가공품만 표시	○추가 : 수산물 및 그 가공품
혼동하게 할 우려 표시 등의 범위	<신 설>	○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- 혼동우려표시 및 위장판매 범위를 예시와 함께 규정함

**□ 주요 내용**

- **쌀과 배추김치**의 원산지표시가 (종전)100㎡이상 음식점에서 (개선)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·적용. **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**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.
  -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, 게시판 등에 표시
    - 배달용 치킨의 경우, 포장재에 인쇄하거나, 스티커,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
- **가공식품**의 경우, (종전)50%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, 50%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, (개선)**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**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강화
  - **가공김치**의 경우, (종전)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, (개선)**새로운 수입 김치속이나 다대기(고춧가루, 마늘, 양파, 생강 등 혼합제품), 고춧가루, 마늘 등 제2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**이 될 수 있음.
    - 단, 사용된 원료중 98%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,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여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
- **통신판매 농식품**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(종전)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었으나, (개선)**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**
- **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**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’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에 품목을 반영하여 8월중 적용할 계획임.
  -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, 암염, 해수(정제소금에 한함)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함.
- **막걸리 등 주류**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(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)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**술의 주원 원료(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)에 대해 원산지 표시**

- 주세법령에 따르면, 소주(회석식)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주정의 가공지 표시

○ (개선)대규모점포(3,000㎡ 이상)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음.

-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물부나 시·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하도록 규정

○ (개선)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 신설

- 현수막 등에는 '우리 농산물만 취급', '국산만 취급', '국내산 한우만 취급' 등으로 표시하고 허위 판매 또는 원산지표시 풋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,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.

-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(종전)100만 원 이내였으나, 농산물과 같이 200만 원 이내로 확대

-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